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201312 이혼
원 고	갑 (1971년생, 남)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을 (1974년생, 여)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사 건 본 인	1. A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2. B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 론 종 결	2017. 10. 11.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원고 및 피고로,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1.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성격 및 대화방식의 차이, 생활비 액수, 피고의 가사에 대한 원고의 불만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다. 피고가 2008. 2. 사건본인 A을 출산한 이후 출근하는 원고를 배려하여 다른 방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원고와 방을 따로 쓰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3.경 회사를 퇴직하고, 2014.경 카페를 개업하였는데, 피고에게 관리비, 보험료, 전기요금, 자동차 관련 비용 이외에 별도로 생활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 봄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2015. 9.경 간호사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출근하여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퇴근하는 반면, 피고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및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마친 후 출근하여 오후 4시경 퇴근하였기 때문에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서로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적어졌다.

마. 원고가 2억 원이 넘는 담보대출을 받자 원고의 부친이 대출금 사용처를 알기 위하여 원고의 행적을 쫓다가 원고가 카페 여직원과 밤늦은 시간에 함께 영화를 보고 여직원을 집까지 내려다주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원고 모친의 친구도 원고의 카페에 왔다가 원고와 여직원이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주의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바. 원고는 카페 여직원과 밤늦은 시간에 피고의 험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십야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함께 하였다. 카페 여직원은 원고 명의로 구입한 차를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집으로 배달된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6. 말경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부모와 의논하여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분할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7. 2. 2.까지 전세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새로이 이사하는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시청각 교육 도중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후 협의이혼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생각과 성격 차이, 화법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다툼

이 잦았다. 또한, 피고는 2005. 이전부터 원고와의 잠자리를 거부하였고, 2008.경부터 원고와의 교류를 거부하며 각자 방을 따로 사용한 이래 대화도 단절되고 교류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 피고는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하였고, 오로지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하여 취업하였으며, 취업한 이후에는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운영 카페 여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조롱하였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수차례 요구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 악의의 유기 등의 사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데,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별도의 생활비를 받기 위하여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성격과 대화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으나, 혼인 후 2명의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순전히 성격과 대화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한 다툼이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졌거나 과격해진 것은 아니므로, 성격과 대화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잠자리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례 성관계를 거부당한 후 복수심에서 피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에게 성관계를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8.경부터 원고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것은 직장에 출근하는 원고를 배려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피고가 간호사로 취업한 이후 서로 근무시간이 달라 대화와 교류가 부족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 자체를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 액수나 현재의 수입액에 비추어 피고가 과다하게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6. 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피고의 취업에 따른 대화와 교류 감소에 대하여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카페 여직원과 밤늦은 시간까지 피고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심야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함께 하며, 카페 여직원이 원고 명의로 구입한 차를 타고 다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카페 운영자와 여직원 사이에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동이다. 원고의 부친과 원고 모친의 지인까지 원고와 여직원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 내지 걱정할 정도였다면,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와 여직원의 관계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은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마치 협의이혼을 할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가도 생각이나 상황의 변화로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으며, 약속과 달리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돈을 받아두라는 원고 부모의 조언도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할 주거지의 전세보증금을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협의이혼에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이 신뢰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대우, 악의의 유기 등의 유책사유

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카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부부 사이가 악화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2016. 봄부터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피고의 급여로 생활해온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나 원고 부친의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원 · 피고의 이혼을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